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공공분양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25.10.1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본 주택은 '25.10.15.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적용)
※ 본 아파트의 단지 명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에서 "분당 아테라"로 결정 하였으니 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03-574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공공분양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 신청 불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3년 ※ 최초 당첨자 발표일(24.03.19.)로부터 3년 적용	5년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함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2.29.(목)	26.01.09.(금)	26.01.14.(수)	26.01.19.(월)	26.01.20.(화)	26.01.26.(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시설물의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사 현장방문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를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09.(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62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066**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1.14.(수)	26.01.19.(월)	26.01.20.(화)	26.01.26.(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분양사무실	(주소: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7-1 DMC자이 2단지 상가 208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4.03.19.)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등 7필지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3~지상21층, 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총 242세대 중 잔여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최초 입주 개시는 2025년 07월로 금회 공급분의 경우 잔금 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262	01	084.9779C	84C	1	101	1503
	합 계			1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수	세대수	주택가격			계약금 (10%)	잔금 (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입주일 또는 2026.03.11.
084.9779C	84C	101-1503	1	404,714,322	365,685,678	770,400,000	77,040,000	693,36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01-0314-6257-11	성남도시개발공사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공사,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주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일 또는 2026.03.11.
84C	839,000	83,900	755,1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샤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01-0343-0950-81	성남도시개발공사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류,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세부 내역 및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품목	내용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일 또는 2026.03.11.
84C	101-150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5대)	8,700,000	13,500,000	1,350,000	12,150,000
		마감재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100,000			
			화장대+드레스룸 선반, 침실1	1,70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며 가구 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장에 비하여 다소간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평면선택 옵션에 따라 마감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평면옵션 비용 산출 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004-612468	금호건설 주식회사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19.(월) ~ 2026.01.28.(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1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2026.01.20.(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순위(사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 비치
	○		당첨자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부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본인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부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세대구성원 전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세대구성원 전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장애인(장애인 등록증)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0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추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01.26.(월)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입금확인증 등) ※ 현장 수납 불가 ※ 분양대금, balconi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계좌가 모두 상이하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④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사업주체 50% / 계약자 50% 균등 납부]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음
	⑤ 자격 검증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단, 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6.01.27.(화) 11: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6.01.27.(화)**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모델하우스),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와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1개소), 경로당, 돌봄센터(북카페/독서나눔실 등),맘스스테이션, 근린생활시설

4.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3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4M
지하2층	2.7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3층	2.3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출입구 없음

5.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일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 체결 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주변으로 서측 보행자전용도로 15m도로, 남·동 측 15m도로, 북측 8m도로가 인접하여, 이로 인한 단지 및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시행자, 시공사,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단지 주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북측 약 340m 할렐루야교회, 서측 약 130m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동남측 약 50m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주변 혐오시설 유무(동남측 약 800m 분당메모리얼파크(남골당), 북동측 약 180m 전기공급시설(야탑변전소), 남동측 약 330m 장례식장/요양병원/천연가스충전소 등이 위치함),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이버모델하우스(단지배치도 등 확인)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남측 약 500m 내에 위치한 야탑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용이 불가함.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이버모델하우스 확인 및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기조성된 보행자전용도로(15m)는 기반시설로, 금번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교육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 통학구역 내 배치 가능 <상탑초등학교군> 중·고등학생 : 학교군 내 배치할 예정 ※학교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학생수 증감,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학교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예정이며, 해당 센터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관청 및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이거나 초등 돌봄수요가 없는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분양홍보물 (카탈로그, 각종광고지)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특화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각동 출입구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공통사항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전기실 인접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동출입구(필로티 진입) 및 저층부 2~3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석재로 마감될 예정(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석재뿔칠로 시공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위치가 결정됨. • 근린생활시설, 보행자전용도로(15m) 이용을 위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101동, 104동 옥상에 각 1개소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태양광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홍보물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소, 부대복리시설, 대지내 공지, 소방도로, 재활용분리수거장,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파라펫 높이,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동선, 재료, 색상 및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시단지내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안테나, 중계기 등)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동, 라인에 따라 속도, 인원, 층수, 대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조경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포장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목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수목의 종류, 높이 및 굵기 등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과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포장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
문주/경비 실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 및 외관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문주는 근린생활시설 및 경비실과 연결되는 형태로 단지 보행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됨. • 경비실은 총1개소 설치 예정이며, 일부 보행자 출입구의 경우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시공시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 추가 설치(이동식 또는 고정식)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시설물	• 헬룸, 배기탑 및 제연헬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하며,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공동주택용 재활용분리수거장 4개소 설치될 예정(개소, 위치 및 규격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일부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재활용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함.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헬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재활용분리수거장, 드라이에어리어(DA), 천창,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무인택배함은 단지 내 통합으로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계철창고는 101동 지하 1층, 2층에 공간이 제공될 예정임. 단, 내부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으니 이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당 단지에는 남측 15m도로변(주출입구), 북측 8m도로변(부출입구)으로 총 2개소의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있으며,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경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시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 지상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측면(근린생활시설 주차 출입구 인근)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택배차량은 주출입구 지하2층 주차장으로 진입가능. 부출입구 지하1층 주차장으로는 택배차량 출입이 불가 함.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환)가 노출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 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함.)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	103, 104동 인근의 어린이놀이터와 101, 102동 인근의 그레이트 가든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101동 하부에 경로당, 104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관리사무소 등)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주민공동시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등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이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관리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급시설	104동 지하 인근에 아파트 전기실/발전기실이, 101동 지하에 맞닿아 펌프실, 저수조가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공통사항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M(1층세대는 2.4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전체 타입에 실외기실 내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 세대 내부가구(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월패드,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은 세대별로 상이하고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거실(스텐딩)과 침실1(벽걸이)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실외기실까지 설치 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기본 시공되는 실 외에 별도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장 특성(선시공분양)상 추가옵션(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더라도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기시공된 냉매배관 매립박스가 설치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됨. - 현관, 발코니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욕실은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세탁실 발코니 배수 및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추가로 노출 시공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정 혹은 발코니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당 현장의 전열교환기는 H13급 헤파필터가 적용되어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
- 84A/B/C 타입의 침실1 문 뒤벽 및 74타입의 침실2-거실사이 벽체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임.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침실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전 타입의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시 피난활동에 방해유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
- 침실1 앞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세대당 1개소 설치(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거실과 침실1, 총 2개소에 설치되며, 에어컨 옵션선택시 해당실의 냉매매립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실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침실1 에어컨 냉매박스 내부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카바 없이 도배로 마감됨. (위치 스티커 부착됨) 냉매박스 인근에 벽걸이용 콘센트(1구형)가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각 세대의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됨.
- 전 세대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위 아래층 교차시공)될 계획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 피난계획은 변경될 수 도 있음.(1층 및 하부층이 필로티인 2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옵션에 따라 난방조절 개소, 위치,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검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 가스 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마감 처리됨.
- 침실 2,3 통합형 옵션(74 타입 제외) 선택시에도 난방 및 조명은 기본(분리)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각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함.
- 음성제어기능은 SKT의 AI스피커(Nugu)에 한해서만 연동됨.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세대 내 Wifi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구현된 제품의 위치 및 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104동 저층세대에서는 부대시설 엘리베이터 및 계단식 옥탑으로 인한 조망간섭이 있을 수 있음.
	창호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풍압검토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협력업체의 부도 등 계약관계로 인해 창호의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거실창 및 침실1창이 넓은 통창이 아닌 분할된 PL입면분할창(외부투시형 난간 없이 안전유리 적용)이 설치되니, 계약전에 도면 및 분양홍보물 등 필히 확인 바람.
	단위세대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음.
	마감	• 천연자재(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없음) •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구현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현관디딤판, 욕실뒷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본 공사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거실 우물 천장 및 각실의 커튼박스의 크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천정물당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도배홀이 설치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유상옵션	•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전시되지 않은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박스와 전원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함.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입주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옵션 선택으로 설치되는 면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옵션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됨. • 삼성 및 LG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 삼성 및 LG 패키지 마감사양은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됨. • 식기세척기는 전면 가구판 마감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입주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등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02.29.)을 준용하므로 공고문 및 해당 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 호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야탑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등록번호	129-83-00153	144-82-00548	104-81-31309

■ 분양관련 문의 및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 분양사무실 :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7-1 DMC자이 2단지 상가 208호

- 분양문의 : 02-303-5741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